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19호)

- '99. 12. 21.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11. 19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9. 11. 25
- 다. 상정일자 : '99. 12. 21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94회 정기회중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가. 제안이유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융자금 신청시 “동장의 추천”제도를 “동장 경유”로 완화 (안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
- 융자금 대부신청시 서초구 거주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대주 2인의 추천”으로 완화(안 제6조 제2항)
-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확인함에 있어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상황을 제출받아 확인 가능함으로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하는 규정을 폐지 (안 제12조 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융자대상자중 저소득층자녀학자금융자 신청시 동장의 추천제도를 폐지(안 제3조제3항)
- 융자금대부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동장을 경유하도록 하며,(안 제6조 제1항)
- 대부신청시 세대주 2인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을 세대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완화하였음.(안 제6조제2항)
- 관계공무원이 자금대출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폐지함.

※ 수탁금융기관의 관계자료에 의하여 감독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융자신청대상자가 서초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조례상(조례 제5조)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이 2천만원 이하이며,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서,
- 대출금회수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할수 있도록(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보증인등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하여 융자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서초구에서 생활안정기금 지원실적과 독지가 참여 여부는?

답> 생활안정기금지원실적은 '99년도 총 10건 1억 5,000만원, '98년도 총 13건 1억 3,000만원이며,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은 참여실적이 없음.

질> 대출금액의 이율과 상환기간 및 최고금액은 얼마인지?

답> 대출금액의 이율은 연 5%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이며, 최고금액은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임.

질>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서초구 거주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추천"으로 할 경우 회수불가시 대책과 수탁기관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96년도부터 은행에서 수탁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수책임은 은행에 있고, 또한 구청에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은 부의미하여 연대보증을 추천으로 개정하였음.

질> 생활안정기금이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 현재의 체납액은 '99년 11월 현재 74건 1억 2,500만원이 체납되었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